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 표본추출 계급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보령시, 당진시, 청양군, 태안군

내 용

충청남도에서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1] 201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세부사업명	지원조건	사업예산(단위 : 백만원)					주요내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사일리지 제조비	국 고 30% 지방비 60% 자 담 10%	9,666	2,900	5,799	-	967	- 사일리지 제조(소모품, 운송비 등)지원 - 단가 : 60천원/톤

「사료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 하거나 표본추출¹⁾(1일 제조량의 5% 이상, 최소 5개 이상)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을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한 후에 제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 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일리지를 전량 또는 표본추출(1일 제조량의 5% 이상, 공무원 입회)하여 계근토록 하고, 담당자는 보조금 집행시 농가 생산량, 평균중량, 지원 단가 확인 등 정산 검정을 철저히 한 후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청양군, 태안군에서는 2016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면서 아래 [표2] ‘조사료 사일리지 표본추출 계근 현황’과 같이 사일리지 측정을 위한 적정기준인 5% 이상을 계근하지 않고 일부분만 계근(청양군 4.6%, 태안군 2.2%)한 후 평균중량을 적용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보조금을 지원 하였으며, 보령시와 당진시에서는 일부 무상지원 계량업체에서 계량증명서의 차량 총중량 및 공차 중량 측정시간을 동일하게 측정하여 계량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이 부적정하게 나타났다.

[표2] 조사료 사일리지 표본추출 계근 현황

1) 표본추출 5% 계근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 실시(필요시 수분 함량 및 현물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시·군	지원 대상자 (명)	지원물량 및 사일리지 수량		표본추출		계량증명서 부적정 현황	
		지원 물량(톤)	사일리지 수량(A)	사일리지 수량(B)	비율 (B/A)	총중량 및 공차중량 측정시간 동일	지원대상법인 (계량업체)
보령시	3	5,512	5,938	5,938	100	1	○○○○○○○○법인 (○○○○○○○○조합)

시·군	지원 대상자 (명)	지원물량 및 사일리지 수량		표본추출		계량증명서 부적정 현황	
		지원 물량(톤)	사일리지 수량(A)	사일리지 수량(B)	비율 (B/A)	총중량 및 공차중량 측정시간 동일	지원대상법인 (계량업체)
당진시	14	11,000	10,916	2,717	24.9	1	○○○○○○○○○○○○○○ (○○○○○○○종합처리장)
청양군	4	1,171,371	1,858	85	4.6	-	
태안군	14	13,000	20,526	447	2.2	-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보령시장, 당진시장, 청양군수, 태안군수는

[주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한 표본추출 시 1일 제조량의 5% 이상 계근하여 평균중량 및 측정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